

22년 임산물 수출상품화사업 1단계 지원업체 모집공고

1. 사업목적

- 해외 시장 선호를 고려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가능한 수출상품을 개발하고 해외 시장 개척을 지원하여 임산물 수출 유망상품 육성

2. 지원대상

- 새로운 수출상품 개발로 신규 수출을 계획하거나, 기 개발상품의 개선으로 수출확대를 계획하는 임산물 및 국산 임산물이 주원료인 가공식품 제조·가공 및 수출업체
- 모집규모 : 5개사 내외
 - ※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및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원제외
 - ※ '우수농식품 패키지, 농식품 상품화, 글로벌브랜드, 수출컨설팅 사업' 등 통합형 지원사업과는 중복지원 제외

3. 지원품목

- 임산물 및 국산 임산물을 주원료로 한 가공식품
 - ※ 2022년 임산물 수출지원사업 지원대상 품목 안내자료 [참고] 참조

4. 지원사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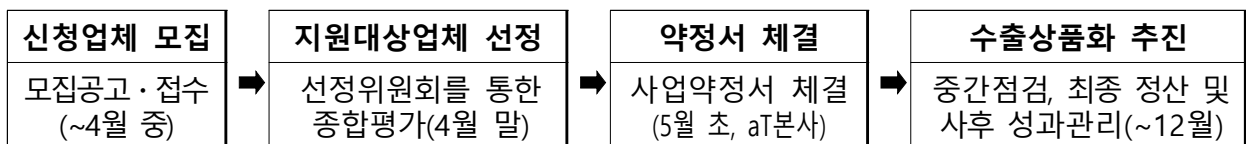
- 지원항목 : 상품개발·개선 비용, 해외마케팅비 지원
 - ※ 상품개발·개선 지원항목에 대해 지원한도의 60% 이상 집행 필수
 - ※ 세부 지원항목 [붙임1] 참조
- 지원내용 : 3단계 연속 지원사업으로서 1단계에서 개발된 상품이 성공적으로 해외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실적평가를 통해 최대 3년간 지원
 - ※ 정부 방침에 따라 조정 가능

지원한도	지원비율	약정기간
최대 2천만원 (3년간 최대 6천만원)	지원한도 이내 실집행 비용의 80% (업체 자부담 20%)	약정체결일 ~ 2022. 11. 30.

5. 평가 주요내용

- 제품 주원료가 국내산 임산물이며, 상품개발·개선 계획이 있는 업체 선정
 - ※ 세부 평가항목 : 수출실적, 재무건전성, 제품역량, 사업계획 적정성, 상품 경쟁력, 수출역량 등
 - ※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 미비 신청업체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평가 결과는 개별 통보

6. 사업 추진절차



※ 사업관리 : 중간점검(7~8월) 및 최종 결과보고 및 정산(11~12월) 후 사후관리 실시

7. 사업신청 안내

- aT 수출업체 종합지원시스템(<http://global.at.or.kr>)을 통한 온라인 신청
- 신청방법 : 로그인(신규업체: 회원가입 필요) → 상단메뉴 ‘수출지원사업신청’ → 참가기업 자가 역량진단 실시 → 2022 임산물 수출상품화 지원사업 (1단계) 신청 → 첨부파일 사업신청서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제출서류와 함께 업로드(압축파일로 업로드)
- 신청기한 : 공고일 ~ 2022.4.27.(수)
- 제출서류 : 해당 서류는 압축하여 신청 시스템에 업로드

제출서류	
①	(필수) 수출상품화사업 1단계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
②	(필수) 사업자등록증 사본
③	(필수) 국산원료 사용 증명가능 서류 * 원산지, 성분비율 등 포함 必 (원산지인증서, 품목제조보고서, 원료구매확인서, 제품 포장라벨 등)
④	(필수) 21년 표준재무제표증명 * 감사보고서, 세무사 또는 회계사 확인 원본 * '21년도 결산 전일 경우 '20년도 자료 제출
⑤	(필수) '21년 수출실적증명원(임산물 수출 확인을 위한 HS코드 등 관련 내용 명기)
⑥	(필수) 개인정보 수집·이용에 대한 동의서
⑦	(필수) 특허 출원 또는 등록증 및 농식품 관련 인증서 사본 * 인증 예시 : 하단 참고자료
⑧	(필수) 무역통계정보동의서 온라인 제출 (기제출업체 생략가능)
⑨	(선택) 수출업체 역량진단 온라인 신청 및 동의 * 신청방법 : global.at.or.kr → [해외시장개척맵] → [수출역량 자가진단] 온라인 신청 * 업체별 연1회 자가진단 참가 이력이 있어야 사업 신청 가능

8. 문의처

- aT 농임산수출부 임산물 수출 담당(061-931-0826, 0829 / imat@at.or.kr)

※ (참고) 계량지표 세부 평가 기준

평가 항목	평가내용	세부 평가 기준
수출 실적	전년도 수출실적	- 무역통계정보제공동의서 제출업체는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상 조회 결과 적용 - 동의서 미제출업체는 수출실적증명원, 수출신고필증의 수출액 기준으로 평가
재무 건전성	자기자본 비율	- 한국기업데이터(크레딧) 정보제공업체는 aT 수출업체종합지원시스템 상 조회결과 적용 - '21년 표준재무제표 증명서 미발급(미제출) 시, '20년 기준으로 평가
제품 역량	특허, 인증 등 보유 여부	- 접수 마감일 기준 유효한 국내외 인증, 특허만 인정(상표, 디자인 특허 인정 불가) - 제조업체가 아닌 Trading사의 경우 인증서는 1개 제조공급업체와 그 제품에만 인정 - (국내인증) ISO, HACCP, GAP, GMP, 유기가공식품, 친환경 농산물, 가공식품KS, 지리적 표시, 유기축산물, 친환경 축산물, 한국할랄, 농업벤처, 전통식품품질인증, 명인, 농공상용합업체, 6차 산업 인증 등 - (해외인증) GFSI 승인인증(FSSC22000, ISO22000, BRC, SQF, IFS, Global GAP, China HACCP 등), 해외유기인증(USDA NOP, EU Organic, JAS, 중국유기인증, IFOAM 등), HALAL(JAKIM, MUI, MUIS, IFANCA, HIPVT, WARES 등), Kosher, Vegan, EAC, Gluten-free, NON-GMO, 재외국 등록(USA FDA, BPOM, VFDA 등)

2022. 4.

붙임 1 2022년 임산물 수출상품화사업 정산기준 (정산요령)

★공통 기준	① 지원대상 : 지원대상 품목 및 목표국가에 대해 집행(상품화 업체가 직접 지출)한 경비에 한함								
	② 계획변경 : 사업신청 시 제출한 사업계획의 변경사항 발생 시 aT와 사전 협의 필요								
	③ 지출증빙 : 사업비 정산 시 지출내역에 대한 관련 증빙서류(원본대조필) 첨부 - 대가지급 영수증은 세금계산서(해외: 세무당국인정영수증)로 첨부하여야 하며, 간이영수증 불인정 - 카드결제 시 카드매출전표, 계좌이체 시 송금증(무통장입금증) 첨부								
	④ 환율 및 수출실적 적용 - 해외에서 현지화폐로 집행한 비용은 집행시점의 최고고시 '송금 보내실 때' 평균환율 적용 * 하나은행 사이트 접속 → 외환 → 환율/외화예금 금리 → 평균환율(기간평균, 최초) 검색 - 수출실적 인정은 수출신고필증 상 금액, 날짜 기준								
	⑤ 중복지원 배제 : 타 기관으로부터 사업비 중복지원을 받을 경우 지원금 환수 및 제재 조치 - aT 타 지원사업과 중복 정산 불가(예 : 농식품 수출상품화, 샘플운송비, 온라인직판지원사업, 해외 박람회 등)								
	⑥ 사업비 집행 및 정산 기준 - 사업비는 '선 집행, 후 정산' 원칙 - 국내 집행금액의 부가가치세, 은행 송금료는 정산대상에서 제외 - 자산구매(유형·무형) 항목 불인정(홈페이지 구축, 기계류 구입 등) - 참가기업의 국내외 비용 송금은 법인 계좌로 송금하는 것을 원칙 - ★ 사업성과 제고를 위해 지원단계별 정산항목 집행가능액 차등화								
	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구 분</th> <th>지원단계별 정산항목 차등 내용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단계</td> <td>'상품개선'에 지원예산의 60% 이상 집행 필수</td> </tr> <tr> <td>2단계</td> <td>'해외마케팅'에 지원예산의 50% 이상 집행 필수</td> </tr> <tr> <td>3단계</td> <td>'해외마케팅'만 지원예산의 100% 집행 가능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구 분	지원단계별 정산항목 차등 내용	1단계	'상품개선'에 지원예산의 60% 이상 집행 필수	2단계	'해외마케팅'에 지원예산의 50% 이상 집행 필수	3단계	'해외마케팅'만 지원예산의 100% 집행 가능
	구 분	지원단계별 정산항목 차등 내용							
	1단계	'상품개선'에 지원예산의 60% 이상 집행 필수							
	2단계	'해외마케팅'에 지원예산의 50% 이상 집행 필수							
3단계	'해외마케팅'만 지원예산의 100% 집행 가능								
- 용역 수행 건의 경우 용역사의 '일반관리비', '이윤'의 한도는 집행액의 10% 한도로 정산 가능(수행기관의 계약서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제출 필요) - 정산기준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은 사전 별도 승인 필요									
⑦ 사업비 정산 - 사업기간 종료('22.11.30) 후 최종 정산이 원칙이나, 필요시 신청 업체에 한하여 중간 정산 가능 * 단, 3단계 지원업체는 수출의무액 달성시 중간 정산 가능 - '22.11.30 이전에 사업 종료 시 조기 정산 가능 - 정산증빙서류는 운영기관 지정 정산용역기관에 제출하며, 1차 검토완료 건에 대해 aT 2차 검토 후 사업비 지급 - 3단계 지원업체는 수출목표액·의무액 달성률에 따라 지원한도액 차등화									
⑧ 공통 증빙서류 1) 용역업체와의 계약서(세부산출내역,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) 2) 결과보고서(행사사진, 제품사진 등 결과물 확인가능한 증빙 필수) 3) 지출증빙									

※ 항목별 세부기준

지원항목	사업항목	정산기준	증빙서류
(1단계) 상품개발·개선	기술도입비 및 제품개발 용역비	▶ 레시피 개발, 신규 기술도입 등을 위한 연구용역 비용 * 용역보고서 내에 향후 수출 활용방안을 포함할 것 * 자체 또는 자회사 등 관계회사를 통한 기술개발 지원 제외 * 자체 추진하는 제품개발에 대한 컨설팅, 자체 추진하는 제품개발을 위한 연구시설 대여 등 지원 제외	① 연구용역계약서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연구실행계획서 ③ 최종 결과보고서 ④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	제품 안전성 검사비	▶ 제품 안전성 검사 및 영양성분 분석 비용(국내·해외) * 최대 5백만원 한도	① 시험의뢰서 - 세부산출내역, 시험품목명, 분석 성분명 포함 ② 분석결과서 ③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
지원항목	사업항목	정산기준	증빙서류
	포장디자인 개발	▶ 포장·용기 디자인 개선 비용 * 수출국 라벨링 규정에 따른 현지 라벨링 개선 포함 必 (스티커 형식의 라벨링 개선 불인정) * 국문 결과물 정산 불인정	①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결과물 * 전후사진 제출 ③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	동판·금형 제작비	▶ 포장디자인 동판, 금형 제작 비용 * 포장재 인쇄, 제작비용은 미지원 * 약정기간 내 개발·개선된 디자인 건에 한함 * 최대 5백만원 한도	①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결과물 ③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	지식재산권 출원비	▶ 특허/실용신안/상표권 출원·등록 비용(국내·해외) * 최대 1천만원 한도	① 특허법인과의 계약서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특허법인 발행 인보이스 - 상세내역 포함 ③ 출원 결과증빙 ④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	해외인증 등록비	▶ 농식품 해외인증 신규 취득비용 * 최대 5백만원 한도 *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인증종류범위 준용	① 용역업체와의 계약서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해외인증 취득 증빙 ③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(2·3단계) 해외 마케팅	샘플운송비	▶ 샘플 운송비(EMS 등 해외물류이용) * 최대 1백만원 한도	① 운송업체와의 invoice ② 수출신고필증(no commercial value 표기 건 또는 거래구분 92에 한함) ③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	해외바이어 초청비	▶ 수출자문을 위한 전문가 초청비 ○ 항공료 : 이코노미 기준 ○ 숙박비 : 1인 1박 기준 20만원 - 인당 1백만원 한도 * 1회 2명 이하, 최대 2회	① (항공) e-티켓, 투숙객명 포함 호텔 발행 숙박비 내역 ② 상담내용이 포함된 결과보고서 - 건별 제출, 사진포함 ③ 초청자 인적사항 - 명함, 여권사본 등 ④ 지출증빙
	주류마켓 입점비	▶ 주류마켓 입점비용 * 최대 1천만원 한도 * 수출실적 필수	① 입점계약서 - 매장명, 신청품목명 표시必 ②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 ③ 수출신고필증
		▶ 온라인몰 신규 입점(등록)비 * 최대 5백만원 한도	① 입점계약서 - 매장명, 신청품목명 표시必 ② 결과물 - 온라인매장 내 제품사진(캡처) ③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

지원항목	사업항목	정산기준	증빙서류												
	홍보용 콘텐츠 제작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제작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인쇄물(현수막·포스터·전단지, 브로셔) ○ 광고물(대중매체, 온라인, 모바일 등) ○ 홍보용 판촉물 구입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대 5백만원 한도 ○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번역비 ▶ 홍보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라디오·TV·잡지·온라인·SNS 등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계약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세부산출내역서 포함 ② 제작결과물 및 결과보고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종결과물 및 홍보콘텐츠 제작 후 해외시장 내 활용 증빙 포함 ③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 <p>* 판촉행사 증정품 구입, 제작비용은 증정품 관리대장(수량명시) 제출 필수</p>												
	해외행사 및 수출상담 출장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해외마케팅 행사 또는 바이어 미팅을 위한 출장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항공료 : 이코노미 기준 ○ 숙박비 : 1인 1박 기준 20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인당 1백만원 한도 * 1회 1명 기준, 총 2회 한도 * 현지시장조사만을 위한 출장, 전문기관 의뢰 불가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항공) e-티켓, 투숙객명 포함 호텔 발행 숙박비 내역 ② 결과보고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출장 건별 제출, 사진포함 * 바이어 미팅 시 명함제출 필수 ③ 재직증명서 ④ 지출증빙 												
	해외 박람회, 온·오프라인 판촉행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임차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사기간 동안 행사장소 임차비용 ▶ 장치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사기간 내에 사용되는 1회성 장치비용 ▶ 홍보행사용 시식물품대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약정기간 수출실적의 10% 이내, 최대 500 만원 한도 * 비품 구매 불인정 ▶ 통역·홍보요원 고용비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[국가별 지원한도(1일/1인)]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일본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JYP25천엔 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미주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유럽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EUR250 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중국·동남아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(기타)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USD200 이내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싱가포르, 홍콩</td> <td></td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USD 250</td> </tr> </table> * 최대 5백만원 한도 	[국가별 지원한도(1일/1인)]	(일본)	JYP25천엔 이내	(미주)	(유럽)	EUR250 이내	(중국·동남아)	(기타)	USD200 이내	*싱가포르, 홍콩		USD 250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주관사/유통매장 발행 임차계약서 ② 행사별 결과보고서(행사장 사진 포함) ③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장치내역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사용단가, 사용기간 포함 ② 장치 사진 및 행사별 결과보고서 ③ 지출증빙 : 용역업체 사업자등록증, 통장사본 포함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입자발행 유통매장 물품납품 증명서 등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ID사본 및 본인 수령 확인 가능한 객관적인 지출증빙서류 (수령확인 서명 필수) ② 행사사진(행사요원 포함)
[국가별 지원한도(1일/1인)]	(일본)	JYP25천엔 이내													
(미주)	(유럽)	EUR250 이내													
(중국·동남아)	(기타)	USD200 이내													
*싱가포르, 홍콩		USD 250													
	*행사 건별 사진 포함된 결과보고서 제출 필수														
	*aT 종합박람회 및 개별박람회에 선정된 경우 정산대상 제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▶ 행사요원 출장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지원항목, 정산기준 : 해외행사 및 수출상담 출장비와 동일 ▶ 대행사 위탁 추진 시 필요증빙 ▶ 온라인 판촉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행사 해당사이트 메인페이지, 슬라이딩, 배너광고 제작 및 홍보비용(행사 관련 매체광고비 포함) 등 ○ 포인트, 쿠폰 등 마케팅 비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최대 5백만원 한도 - 마케팅 계획은 사전 협의 必 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~④ 해외행사 및 수출상담 출장비와 동일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대행사와 체결한 계약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예산내역 포함 ② 결과보고서(사진포함) ③ 지출증빙(집행증빙 포함) <p>[증빙서류]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온라인매장 내 제품사진(캡처) 마케팅내역 관련 증빙(온라인 매장 내 홍보사진, 온라인매장 발급 증빙서류 등) ② 온라인 매출 또는 행사상품 수출 실적 <p>[기타사항]</p> <p>* 자사 홈페이지 통한 판촉비 불인정</p>												

※ aT 해외인증등록지원사업 지원대상 인증명(안)

: ISO22000, FSSC22000, BRC, SQF, IFS, Global GAP, China HACCP, USDA NOP, EU Organic, JAS, 중국유기인증, IFOAM, Halal, Kosher, Vegan, EAC, Gluten-free, NoN-GMO